

14-파. 인권 보호 및 성희롱·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5년 7~8월(대학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실태조사)

【공시시기】 : 2025년 10월

【공시방법】 : 간접입력(교육부)

【공시내용】 : 2025년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5. 4. 1.)

| 기준 연도 | 인권센터 조직 현황 | | 인권센터 시설 현황 | | | 인권센터 인력 현황 | | |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현황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|--|--|
| | 설치 여부 (O/X) | 예산 (단위: 원) | 상담·조사 독립 공간 유무 (O/X) | 상담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(CCTV) 설치 유무 (O/X) | 상담실 내 비상벨 설치 유무 (O/X) | 인권센터장 유형(작성 지침 참고) | 총 직원 수 (단위: 명) | | 성희롱·성폭력 대응 인력과 인권 침해 대응 인력 구분 여부(O/X) | 설치 여부 (O/X) | 위원 구성 현황 (단위: 명)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전담 인력 | 겸직 인력 | | | 전체 위원 수 | 교직원 | | 학생 | | 전문가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현황 | | | |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시설 현황 | | |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인력 현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설치 여부 (O/X) | 설치 유형 (①~⑤중 선택) | 전담 인력 지정 여부 (O/X) | 예산 (단위: 원) | 상담·조사 독립 공간 유무 (O/X) | 상담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(CCTV) 설치 유무 (O/X) | 상담실 내 비상벨 설치 유무 (O/X) | 부서장 | | 부서원 | | | | | | 고용 형태별 (단위: 명)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성별 (단위: 명) | 성별 (단위: 명) | 업무별 (단위: 명) | | | | 고용 형태별 (단위: 명)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남 | 여 | 남 | 여 | 성사안 예방+대응 업무 | 성사안 예방 업무 | 성사안 대응 업무 | 기타 행정 업무 | 정규직 (무기계약직 포함) | 기간제 계약직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조사·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현황 | | | | | | |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규정 현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위원회 설치·운영 | | 위원 구성 현황 (단위: 명) | | | | | 규정 제정 여부 (O/X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설치 여부 (O/X) | 성사안 전담여부 (O/X) | 대학 내부 | | 대학 외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남 | 여 | 남 | 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■ 작성지침

【인권센터 조직 현황】 : 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

【조직 현황 - 설치 여부】 : 인권 업무 수행 기구의 설치 유무를 O/X 중 택1

【조직 현황 - 예산】 : 2025회계연도 기준 인권센터에 배정된 예산으로 인권센터 업무를 위해 별도 채용된 사람의 인건비 포함

【인권센터 시설 현황】 : 인권센터에 갖추고 있는 안전장치 현황

【시설 현황 - 상담·조사 독립공간 유무】 :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는지 O/X 중 기재

【시설 현황 - 상담실 내 CCTV 설치 유무】 : 상담 조사 공간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O/X 중 기재

- 【시설 현황 - 상담실 내 비상벨 등 보호 장치 설치 유무】** : 상담 조사 공간 내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O/X 중 기재
- 【인권센터 인력 현황】** : 인권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에 관한 현황
- 【인력 현황 - 인권센터장 유형】** 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참고, 1호의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(교원으로서의 직위)으로 작성, 2호의 외부 전문가인 경우는 외부전문가(전문분야) 기재 (예) 교원(부교수), 외부전문가(상담)
- 【인력 현황 - 총직원 수】** : 인권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체 직원 수(센터장, 행정, 상담, 조사 인력 포함. 전담 인력, 겸직 인력 모두 포함)
- 【인력 현황 - 전담 인력 수】** : 인권센터 업무(성희롱·성폭력 관련 업무 포함)만을 전담하고 그 외 기관·부서의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지 않은 직원 수
- 【인력 현황 - 겸직 인력 수】** : 총직원에서 전담 인력을 제외한 직원 수로, 인권센터 업무(성희롱·성폭력 관련 업무 포함) 외에 다른 기관·부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직원 수
- 【인력 현황 - 성희롱·성폭력 대응 인력과 인권침해 대응 인력 구분 여부】** :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두고 있는지 여부를 ‘O/X’로 표시
- 【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현황】** :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현황
- 【운영위원회 - 설치 여부】** :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O/X 중 택1
- 【운영위원회 - 전체 위원 수】** :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구성된 총 위원 수 기재
- 【운영위원회 - 위원 구성 현황】** 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5항의 분류에 따라, 교직원·학생·전문가 위원의 임명 현황을 성별을 나누어 기재
- 【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현황】** : 인권센터를 포함, 학내 구성원(학생·교직원)과 관련한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, 고충 상담, 사안 처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
 ※ (기준) 학교법인 정관, 학교규칙 및 직제 규정 등에 명시된 조직 및 기구
- 【조직 현황-설치유형】** : ① 인권센터 내에 설치, ② 일반 학생상담센터 내 설치, ③ 학내 행정기관 내에 설치, ④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, ⑤ 기타 중에서 하나만 선택
- 【조직 현황-전담인력 별도 지정 여부】** : 전담조직 내에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하는 자를 그 밖의 업무(인권, 학생상담 등) 하는 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 여부를 ‘O/X’로 표시
- 【조직 현황-예산】** : 회계연도 2025년 기준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(인권센터 내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업 등)에 배정된 예산으로, 인건비를 제외한 후 입력
- 【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시설 현황】** : 전담조직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,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현황
- 【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인력 현황】** :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현황(부서장 포함)
- 【인력 현황-업무별】** : 전담업무별로 구분(성사안 예방+대응 업무, 성사안 예방 업무, 성사안 대응 업무, 기타행정 업무로 분류)
 ※ ‘성사안 예방 업무’는 교육, 각종 예방행사, 성인식 조사 등이 해당되고, ‘성사안 대응 업무’는 성고충상담, 사안처리 등이 해당되며, ‘기타행정업무’는 성사안 예방 및 대응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업무가 해당됨. 성사안 예방 업무와 대응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‘성사안 예방+대응 업무’에 표시하고, 예방·대응·행정업무가 중복될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큰 업무에 표시
- 【인력 현황-고용 형태별】** : ‘계약직’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상 ‘기간제 근로자’ 및 ‘단시간 근로자’에 해당하며,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(무기계약직 포함)으로 분류

【성희롱·성폭력 사건 조사·심의 위원회 설치·운영 현황】 : 학내 성희롱·성폭력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심의 등 조치를 위해 구성, 운영하는 위원회

【조사·심의 위원회-성사안 전담여부】 : 대학 내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조사·심의 등 처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타 위원회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‘O/X’로 표시

【조사·심의 위원회-위원 구성 현황】 :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인 대학 내부로, 해당 학교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대학 외부로 구분

【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규정 현황】 : 학내 성희롱·성폭력 사안 발생 시 사건처리에 근거가 되는 규정 제정 여부

■ 참고사항

- 인권센터 운영 현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운영 현황은 교육부(<대학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> 사업을 통해 실시하는 실태조사)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교육부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